

인도네시아 투자 가이드

인도네시아 해외 직접 투자와 관련한 FAQ 28

A concise guide to the key aspects of doing business in Indonesia



Disclaimer:

This Guide includes information obtained or derived from a variety of publicly available sources. PwC has not sought to establish the reliability of these sources or verified such information. All such information is provided “as is” and PwC does not give any representation or warranty of any kind (whether express or implied) about the suitability, reliability, timeliness, completeness and accuracy of this publication. This publication is for general guidance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trued as professional advice. Accordingly, it is not intended to form the basis on any decision and you are advised to seek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on any transaction or matter that may be affected by this publication before making any decisions or taking any action.

This is an unofficial Korean translation of publications in English. Whilst every care has been taken in the preparation of the translation, no responsibility or liability is accepted by PwC Indonesia as to the accuracy of the translation. We would recommend that users should refer to the official English version of the publications in any doubt.

No part of this unofficial translation may be reproduced or distributed by any method without our prior consent.

서문

PwC Indonesia는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해외기업과 투자를 계획 중인 해외기업에 원스탑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동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적도를 따라 위치한 세계 최대 군도 국가이며 인구는 약 250천명으로 세계 4위에 해당하며 경제규모로는 세계 16위에 해당합니다. 최근에 한국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인도네시아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ASEAN의 초기 회원국 중 하나이며 최근에 자유경제주의를 표명하고 있는 점이 외부로부터 인도네시아의 투자매력도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ASEAN 및 아시아 퍼시픽을 향한 투자 거점 및 지역 거점으로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많은 천연자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여전히 세계 최대의 팜오일 생산국에 해당하며 석탄을 포함한 많은 천연자원의 수출이 경제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기조의 정책에서 내수산업 진작을 위한 천연자원의 프로세싱을 국내로 전환하는 등 제조기반의 산업을 육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바섬 중심의 개발에서 아직까지 개발이 낙후된 지역으로 개발로 초점을 돌리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가 전반적으로 많은 잠재적인 개발 기회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통계학적으로 30세 이하의 젊은 층의 인구가 약 165천명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인구의 약 80%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모바일폰 보급율은 110%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달리,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개발의 어려움과 부패에 대한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많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높아, 많은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 투자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 책자는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해외투자자 또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세무, 규정 및 관세와 관련한 핵심적이며 기본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목적으로 편찬하였습니다.

PwC Indonesia는 약 1,900여 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있으며, 인도네시아 투자자들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언제든지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wC Indonesia

목차

5

들어가며

인도네시아 투자 개요

6

제 1 장

설립단계

- Entering Indonesia

13

제 2 장

운영단계

- Maintaining Foreign Investment in Indonesia

26

제 3 장

청산단계

- Exit Strategy

29

용어해설

- Glossary

32

Our Services

How we can help you set up business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투자 개요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해외 직접 투자의 투자 주기는 다음과 같이 3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설립단계
- 운영단계
- 청산단계

뒤에서 설명하는 28가지의 질문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위에 모든 단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의하는 사항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요 주제는 투자, 고용, 회계, 세무 및 관세와 규정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1 장

설립단계

- Entering Indonesia

- 인도네시아에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어떤 형태로 진출이 가능할까요?
- 인도네시아에 PMA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최소 투자 요건이 있는지요?
- 투자자가 PMA회사를 100% 소유할 수 있는지요?
- PMA회사의 주주수에 대한 최소 요건이 있는지요? 또한, 개인 또는 회사가 PMA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는지요?
- 명의 차용 계약(Nominee Arrangement)이 허용되는지요?
- PMA회사의 설립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영업활동의 시작까지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가능한지요?
- 인도네시아에 PMA회사 투자와 관련하여 모회사의 소재 국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요?
- PMA회사의 주주들이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요?
- PMA회사의 주주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 PMA회사의 경영진은 어떻게 구성이 되며, 경영진의 책임과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 투자자가 우선주를 보유할 수 있는지요?



1. 인도네시아에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어떤 형태로 진출이 가능할까요?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하기의 두 가지 형태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a) 국외 투자 목적을 위하여 유한책임회사(Perusahaan Penanaman modal asing 또는 PMA 회사) 형태의 인도네시아 자회사 설립
- (b)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RO)의 설립

인도네시아의 투자법에 따르면, 외국투자자가 PMA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상업활동 또는 사업활동(즉, 서비스의 공급 또는 재화의 공급)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PMA 회사는 인도네시아 현행 규정과 법률에 따라 승인된 상업활동 및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적합한 법적실체 지위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른 옵션으로는 RO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RO는 외국기업이 인도네시아 내에 설립할 수 있는 승인된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RO는 법적 지위가 없으며, 시장조사와 연락사무소의 역할과 같이 제한적인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외에 소재한 본사와 인도네시아 내의 이해관계자간의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RO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어떠한 사업활동(계약서의 서명, 인보이스 발행, 결제대금의 수령 등)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Regional RO, trade RO 및 public works RO 등의 형태가 있으며, 각각의 RO는 별도로 승인된 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Public Works RO의 경우에는 수익창출활동(즉, 건설서비스 제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인도네시아에 PMA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최소 투자 요건이 있는지요?

투자 규정에 따른 외국 투자의 최소 투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총 투자금액은 반드시 RP. 10,000,000,000 (또는 USD로 환산한 금액)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총 투자금액은 자본금과 부채를 포함하며, 토지와 건물의 투자 금액은 제외됩니다.
- ii. 납입자본금은 반드시 발행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이어야 하며, 최소 자본금액은 Rp. 2,500,000,000 (또는 USD로 환산한 금액) 이상입니다.
- iii. 각 주주의 주식 참여금액은 최소 Rp 10,000,000 (또는 USD로 환산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며, 지분율은 주식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총 투자금액은 자본금과 부채로 구성이 되며, 투자청(BKPM)의 권장사항에 따르면, 부채:자본 비율이 3: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BKPM은 예외적으로 3:1을 초과하는 부채:자본 비율을 투자 계획 및 사업의 정당성에 따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주주로 부터 차입금(주주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채에 포함합니다.

또한, BKPM 및 관련 당국에서는 사업의 유형(즉, 제조업, 건설업 등)에 따라 상기에 설명한 최소 투자 금액보다 높은 기준의 투자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투자자가 PMA회사를 100% 소유할 수 있는지요?

인도네시아는 Negative Investment List(DNI)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i) 외국인 투자 금지 업종과 (ii)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요건에 따라 외국투자 가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업종과 관련하여 DNI는 외국인의 최대 보유 지분율을 49%부터 95%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NI에 규정되지 아니한 비즈니스 업종은 외국인 투자가 100%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DNI에 규정되지 아니한 비즈니스 업종에 대한 투자를 진행시에 BKPM과 추가적인 협의를 통하여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DNI에 비즈니스 업종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BKPM이 이를 외국인 투자제한 또는 금지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 유의 하여야 합니다.

4. PMA회사의 주주수에 대한 최소 요건이 있는지요? 또한, 개인 또는 회사가 PMA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는지요?

인도네시아 회사법은 유한책임회사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 또는 회사(법적실체) 모두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경우에 투자자는 PMA회사의 2인 이상의 주주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투자자 이외에 1인(관계사 등) 이상의 주주가 필요합니다.



5. 명의 차용 계약(Nominee Arrangement)이 허용되는지요?

인도네시아 투자법상 외국인 주주가 내국주주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형태의 Nominee Arrangement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한의 목적은 형식상의 주주와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되는 주주가 상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투자법상 외국인 주주와 내국인 주주가 체결한 Nominee agreement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6. PMA회사의 설립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영업활동의 시작까지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가능한지요?

2018년 부터 Online Single Submission(OSS) 시스템의 도입으로 법인설립 유관부서들이 대부분의 라이선스 발급 권한을 OSS로 위임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도입으로 인하여 현재 PMA회사의 설립기간은 약 2~3주로 단축되었으며, 동 기간은 행정절차 완료를 위한 서류의 완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MA회사가 영업활동 또는 생산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업활동 또는 생산활동 이전에 상업활동허가(Izin Komersial)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사업활동(또는 투자업종)에 따라 PMA회사는 영업활동을 법인설립이 완료된 직후에 바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레이딩 또는 매니지먼트 컨설턴시 업종의 PMA회사는 법적인 설립절차가 완료(설립과 관련하여 법무인권부(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의 승인을 취득한 시점) 된 시점부터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7. 인도네시아에 PMA회사 투자와 관련하여 모회사의 소재 국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요?

투자 규정 측면에서 투자자는 인도네시아와 타국가간 체결된 국제 투자 협약(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인도네시아 국제 투자 협약이 체결된 국가에 동일한 지배 그룹 하의 관계사가 있는 경우, 투자자는 인도네시아 내 투자와 관련하여 특정 인센티브(예: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외국인 투자 제한의 완화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PMA회사의 주주들이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요?

PMA회사의 주주는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법적인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PMA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9. PMA회사의 주주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주주는 주식의 소유권을 통하여 PMA회사의 소유자가 됩니다. 주주는 PMA회사의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시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권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10. PMA회사의 경영진은 어떻게 구성이 되며, 경영진의 책임과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인도네시아 회사법은 경영진의 구성(governance system)과 관련하여 이사(Directors)와 감사위원회(The Board of Commissioners)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사(Directors)는 회사의 주요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게 되며, 제 3자와의 관계에서 회사를 대표하게 됩니다.

감사위원회(The Board of Commissioners)는 감독기구로서 일반적인 책임과 감독 권한을 부여받게 되며, 회사의 경영에 있어 이사회에게 조언을 하여야 합니다.

11. 투자자가 우선주를 보유할 수 있는지요?

주주는 특정한 우선적인 권리가 있는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회사법은 주식의 종류(classification)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 배당 또는 청산시 잔여재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우선주 등이 있습니다.



제 2 장

운영단계

Maintaining Foreign Investment in Indonesia

- 12. 인도네시아에서 적용되는 세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13. 인도네시아에서 PMA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지요?
- 14. PMA회사가 루피아가 아닌 화폐로 회계기장을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인도네시아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 15. 회계감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요?
- 16. 인도네시아에서 해외로 외화를 반출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요?
- 17. 인도네시아 내 PMA회사가 배당을 하는데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요?
- 18. 해외투자자가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경우에 어떤 투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19. 수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수입자는 누구인지요?
- 20. 수입활동을 하는 경우 참고하여야 하는 현행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21. PMA회사가 어떻게 수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요? 수입활동을 위하여는 어떤 라이선스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 22. 수입활동을 할 때 적용되는 수입세 및 관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23. 수입 제한 재화와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24. 외국인 직접 투자와 관련하여 수입관세 경감 혜택이 주어지는지요?
- 25. 수출 위주의 기업에 적용되는 별도의 관세 혜택이 있는지요?
- 26. 수출 및 수입 거래이후에 사후적인 관세조사가 있는지요?





12. 인도네시아에서 적용되는 세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소득세(Income Tax):

세무상 거주자(회사 또는 개인)는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무상 거주자와 외국회사의 인도네시아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은 반드시 조세채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직접납부, 제3자를 통한 원천징수 및 두 가지 방법의 혼용을 통하여 조세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i)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CIT)
법인소득세율은 25%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세율은 특정 납세자에 한하여 경감이 가능합니다.
- (ii) 원천징수세 (Withholding Tax, WHT)
또한, 인도네시아의 소득세는 원천징수세 시스템을 통하여도 징수됩니다. 특정 소득이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의 지급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iii) 고용인에 대한 세금(Employee Income Tax, EIT)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급여를 지급시에 소득세법 21조(PPh 21)에 따라 급여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이를 고용인을 대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동 원천징수는 비고용인이 개인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iv)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합산하여 인도네시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인 세법상 거주자는 5% - 30%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창출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26조(PPh 26)에 따라 2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가간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소득의 항목에 따라서 세율을 경감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b)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

부가가치세는 인도네시아 과세지역 내에서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이나 과세대상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부과하며, 세율은 10%입니다. 재화의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합니다. 서비스의 수출의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는 재무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c) 사치품 소비세(Luxury Goods Sales Tax, LGST)

일부 재화(예를 들면, 특정 고가 가전 제품, 스포츠 장비, 모터 싸이클, 고급 주택 등)는 제조업자로부터 수입 또는 공급되는 시점에 사치품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사치품 소비세율은 10% 부터 20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d) 인지세(Stamp Duty)

인지세는 소액으로 특정문서(예를 들면, 계약서, 위임장, 공증서류 등)에 대하여 IDR 6,000 또는 IDR 3,000의 고정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세금

토지 및 건물세(Pajak Bumi dan Bangunan/PBB)는 지방세의 한 종류에 해당하며, 지방세 법(Pajak Daerah

dan Retribusi Daerah/PDRD)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정부 규정(Peraturan Pemerintah Daerah/PERDA)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PBB율은 부동산과세적용가액(Nilai Jual Objek Pajak/NJOP)의 최대 0.3%이며, 비과세대상 NJOP는 계산시 차감됩니다.

지방세법 하의 PBB는 조림업, 플랜테이션, 광업지역 등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되는 산업을 제외하고 모든 토지와 건물에 적용됩니다.

(f) 토지 및 건물의 취득세

부동산의 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매수자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최고 5%의 취득세(Bea Pengalihan Hak atas Tanah dan Bangunan/BPHTB)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금액과 정부에서 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BPHTB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지방세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g) 기타 지방세

법인 납세자는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세 관련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지방정부에서 정하는 과세대상 가격의 1.5%에서 30%까지 다양한 범위로 세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Motor vehicle tax.
- Motor vehicle ownership transfer fee.
- Motor vehicle fuel tax.
- Surface water tax.
- Cigarette tax.
- Hotel tax.
- Restaurant tax.
- Entertainment tax.
- Advertisement tax.
- Road illumination tax.
- Non-metal and rock minerals tax
- Parking tax.
- Ground water tax.
- Swallow-nest tax.

13. 인도네시아에서 PMA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지요?

예. PMA회사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Ministry of Manpower에서 지정한 일부 포지션의 경우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인사(human resource)담당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working permit과 stay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노동법(Manpower Law)은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외국인의 working permit을 부여하는 전제조건으로 인도네시아 내국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법에서는 1명의 외국인당 최소 1명의 내국인을 고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4. PMA회사가 루피아가 아닌 화폐로 회계기장을 할수 있는지요? 또한, 인도네시아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세무 목적상, 회사의 장부는 반드시 루피아로 기장이 되어야 하며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여 인도네시아 내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일부 회사는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하여 장부기장을 USD 및 영어로 할 수 있습니다. 사전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적용받고자 하는 회계연도의 시작시점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모든 회계장부, 기록 및 재무제표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재무부로부터 사전에 타언어의 사용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타언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15. 회계감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요?

다음의 회사는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a) 상장회사
- (b) 시장에서 펀드를 모집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예를 들면, 은행, 보험회사 등)
- (c)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 (d) 자산이 IDR 25 billion 이상인 회사
- (e) 은행차입금이 있는 경우, 은행에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경우
- (f)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PMA회사
- (g) 특정 정부 소유 기업

16. 인도네시아에서 해외로 외화를 반출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과 관련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투자자는 자유롭게 외화를 반입하거나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화의 반입과 반출은 중앙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서도 중앙은행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7. 인도네시아 내 PMA회사가 배당을 하는데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요?

회사는 회계상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있으며, 배당하는 경우에 특정 금액의 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당은 반드시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PMA회사가 세법상 인도네시아 비거주자인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동 원천징수세율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18. 해외투자자가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경우에 어떤 투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해외투자자과 관련하여서는 세무상 혜택과 수입관련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관련 혜택(Import Facility)

자본재(capital goods) 및 원자재(raw materials)의 수입과 관련하여 투자자는 수입관세와 관련 세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 수입관세 면제 혜택:

PMK.176/PMK.011/2009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는 자본재 및 원자재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수입관세 면제 혜택은 일반적으로 Master List Facility로 알려져 있으며, 수입되는 재화가 하기의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항목
-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은 되지만, 품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이 되며 품질 요건이 만족은 되지만, 산업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기의 면제 신청은 회사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b) 수입세 면제

수입관세 면제 혜택과 함께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수입원천징수세(Article 22)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부가세

정부령 No.81/2015 (GR-81)와 시행규정인 재무부령 268/PMK.03/2015에 따르면, 하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입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 과세대상 기업만이 DGT로부터 수입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부가세 면제 혜택은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이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설비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Spare part 제외). 부가세 면제 혜택과 관련한 전략적인 재화에 대한 사항은 GR-81의 Article 1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면제 신청서는 반드시 재화의 수입 및 공급 이전에 제출이 되어야 하며, DGT는 면제 신청서를 받은 이후 5영업일 이내에 결정통지서(VAT exemption letter/Surat Keterangan Bebas Pajak Pertambahan Nilai)를 발부 하여야 합니다.
- 재화의 수입 및 취득 이후 4년 이내에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재화가 타인에게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 및 취득시 면제받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원천징수세 Article 22

Article 22에 따른 수입원천징수세는 수입자가 수입라이선스(API)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2.5% 또는 7.5%가 부과됩니다. 동 혜택은 DGT규정 No.21/PJ/2014에 규정되어 있으며, 납세자가 미납세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이 됩니다. 동 면제혜택은 DGT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법인세 혜택:

(a) 법인세 감면:

법인세 감면 또는 경감을 승인받은 회사는 상업생산 시점부터 5년 에서 10년 기간동안 법인세 감면 또는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혜택이 종료된 이후에 회사는 2년 동안 50%의 법인세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혜택은 선도산업(pioneer industries)에 속하는 회사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선도산업이란 광범위한 연계성을 가지고 가치창출 및 외부 효과가 높고 신기술에 해당하며 국가 경제에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b) 투자인센티브:

투자 인센티브는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된 특정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i) 상업생산 시점부터 연간 5%씩, 6년간 투자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 (단, 투자된 자산이 6년간 이전되지 아니하여야 함)
- (ii) 가속상각 인정
- (iii)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최장 10년까지 연장
- (iv)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 원천세율을 10%로 경감(또는 조세협약에 따라 낮은 세율 적용가능)



19. 수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수입자는 누구인가요?

인도네시아 관세법(1995년) No. 10과 개정법(2006년)의 No. 17의 Article 1의 12항 및 13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12. Person shall be any individual or legal entity.

13. Import shall be any activity of entering goods into the customs area.”

따라서, 개인 또는 법인은 재화를 인도네시아 관세지역(custom area) 내로 수입하는 수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 수입활동을 하는 경우 참고하여야 하는 현행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관세법 No. 10/1995 및 관세법 No. 17/2006;
- 재무부 규정 No. 213/PMK.011/2011 및 재무부 규정 No. 31/PMK.010/2016 : 재화의 구분 시스템 및 수입재화와 관련한 수입관세 요율
- 재무부 규정 No. 160/PMK.04/2010 및 재무부 규정 No. 34/PMK.04/2016 : 재화의 구분 시스템 및 수입재화와 관련한 수입관세 요율
- 통상부(Minister of Trade, MoT) 규정 No. 70/M-DAG/PER/0/2015 : 수입자 식별 번호
- 재무부 규정 No. 59/PMK.04/2014 : 관세 등록
- 통상부 규정 No.87/M-DAG/PER/10/2015 :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한 조항
- 통상부 규정 No.50/M-DAG/PER/7/2015 : 특별 수입자 식별 번호
- 정부령 No. 2/1996, 정부령 No. 42/1997, 정부령 No.16/1998 : 수출과 수입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회사의 활동



21. PMA회사가 어떻게 수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요? 수입활동을 위하여는 어떤 라이선스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PMA회사는 수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실체로서 PMA회사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PMA회사가 수입활동을 위한 주요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수입자 식별 번호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Angka Pengenal Impor/API)

API에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생산자 수입 식별 번호 (Angka Pengenal Impor Produsen/API-P)
API-P는 수입자의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재화, 원재료 및 기계장치/설비의 수입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 일반 수입 식별 번호 (Angka Pengenal Impor Umum/API-U)
API-U는 판매목적으로 특정 재화를 수입하는 회사에 부여가 됩니다. 특정 재화의 수입은 관세법과 규정에 따른 재화의 Classification System에 포함된 재화의 그룹/유형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유통업을 영위하는 PMA회사에 적합한 수입 라이선스는 API-U입니다.

b) 관세 식별 번호 (Customs Identity Number, Nomor Identitas Kepadeanan/NIK)

모든 수입자 및 수출자는 NIK를 받아야 합니다. API와 NIK는 현재 유관부서를 대신하여 OSS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22. 수입활동을 할 때 적용되는 수입세 및 관세는 어떤 것들이 있지요?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내로 재화의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수입관세와 세금이 적용됩니다.

- 수입관세(Import Duty)

수입관세의 적용 요율은 해당 HS(Harmonised Commodity)코드에 따라 적용됩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최고 40%의 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항목은 0%에서 15%이내의 요율을 적용 받습니다.

수입관세는 CIF (Cost, Insurance 및 Freight)가격에 관세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증지세

증지세 대상 항목은 에틸 알코올 또는 에탄올, 에틸 알코올을 포함한 음료 및 담배제품입니다.

수입되는 재화와 관련하여, 증지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증지세율 X 관세가격(Customs value) +
(수입관세 또는 증지세율 X 소매가격)

증지세법에 따르면, 담배 제품의 최대 증지세율은 (관세가격 + 수입관세)의 275% 또는 소매가격의 57%입니다. 다른 제품의 최대 증지세율은 (관세가격 + 수입관세)의 1,150% 또는 소매가격의 80%입니다.

- **부가세**

부가세는 단일세율로 10%세율을 적용합니다. 수입부가세는 (CIF가격 + 수입관세)의 10%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수입원천징수세(Article 22)**

수입원천징수세율은 0.5%에서 10%까지 적용됩니다. 수입원천징수세는 (CIF가격 + 수입관세)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사치품 소비세(Luxury Goods Sales Tax/LGST)**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재화의 구분을 위하여 HS코드를 기준으로 수입관세를 적용합니다. 또한, 특정 사치품에 대하여 사치품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재화가 수입되는 시점에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제품의 통관 이전에 관련 수입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되는 재화가 수입관세 및 관련 세금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즉, 수입자가 수입관계 및 세금 면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으로 부터 재화가 반출되지 이전에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부가세는 수입신고서(PIB)가 재화의 소유주 이름, NPWP, 주소 및 기타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한 경우에는 재화의 소유주가 Credit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Article 22의 수입원천징수세는 일반적으로 선납세금으로서 회사의 법인세 계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최종분리과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23. 수입 제한 재화와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모든 수출과 수입 거래는 관련 부처의 적합한 수출자 및 수입자 라이선스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항목이외에는 모든 재화는 수출 및 수입이 가능합니다. 일부 품목은 재무부 규정으로 제한 및 금지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출자와 수입자는 제한 및 금지 품목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수출자와 수입자는 제한 및 금지 품목의 수출과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청에 수입신고서를 제출시에 반드시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외국인 직접 투자와 관련하여 수입관세 경감 혜택이 주어지는지요?

인도네시아와 자유무역협약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부 재화는 낮은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하기와 같이 7개의 관세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일본 (인도네시아-일본 경제 파트너십 협약 / IJEPA)
- 아세안 (AEC Trade in Goods Agreements / ATIGA)
- 중국 (아세안-중국 자유무역지구 / ACFTA)
- 한국 (아세안-한국 자유무역지구 / AKFTA)
- 인도 (아세안-인도 자유무역지구 / AIFTA)
- 호주 및 뉴질랜드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지구 / AANZFTA)
- 파키스탄 (인도네시아-파키스탄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 IPPFTA)



25. 수출 위주의 기업에 적용되는 별도의 관세 혜택이 있는지요?

a. 보세구역(Bonded Zone)

수출 위주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아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세구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완제품을 생산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재료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관세 및 관련 세금(부가세, 수입원천징수세, 사치품소비세) 면제.
내국 시장에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수입관세 및 관련세금을 완제품이 내국 시장에 공급되는 시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세구역 내에서 생산 공정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본재

보세구역 라이선스를 보유한 회사는 전년도 수출 실적 및 타 보세구역에 대한 매출의 최대 50%까지만 국내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은 관세청에 의하여 관리를 받습니다.

b. 수출에 대한 수입세 면제 (Kemudahan Impor Tujuan Ekspor/KITE)

KITE혜택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KITE Exemption 면제**
완제품이 수출된 경우에, 생산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에 대하여는 수입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KITE Drawback 환급**
완제품이 수출된 경우에, 생산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에 대하여 기 납부한 수입관세 및 부가세에 대하여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mpanies which already have a NIPER (Company Registration Number) can enjoy the KITE Facility and companies which are engaged in industrial manufacturing for export.

26. 수출 및 수입 거래이후에 사후적인 관세조사가 있는지요?

관세청은 정기적으로 사후 관세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세조사는 일반적으로 관세가격, 분류 및 관세 혜택을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낮은 관세가격, 잘못된 코드 및 잘못된 수량은 관세 납부한 수입관세의 100%에서 최대 1,000%까지 패널티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세 혜택을 받는 경우에 행정적인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심각한 패널티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제 3 장

청산단계

- Exit Strategy

- 인도네시아에서 PMA회사가 청산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PMA 회사가 청산하는 경우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요?
- 청산된 회사의 주주로서의 투자자의 의무는 무엇인지요?



27. 인도네시아에서 PMA회사가 청산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PMA회사가 청산하는 경우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요?

일반적으로 청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청산 및 청산관재인(Liquidator)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 (b) 잔여재산 처분 계획 및 청산에 대한 사항을 채권자들에게 공지하기 위한 신문 공고 및 법무인권부에 청산 신청
- (c) 회사의 라이선스 취소(사업라이선스 및 세무등록번호 - 세무서는 세무등록번호 반납을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수행함)
- (d) 채권자에게 채무 청산 및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배분
- (e) 청산관재인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 (f) 청산의 결과에 대하여 법무인권부에 통보. 결과 통보 이후에 법무인권부는 회사등록대장에서 회사의 이름을 삭제하고 법적실체로서의 회사의 상태를 등록취소하여야 한다.
- (g) 청산의 결과를 공지하기 위한 신문공고

일반적으로 청산절차를 완료하기까지는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8. 청산된 회사의 주주로서의 투자자의 의무는 무엇인지요?

주주는 청산을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에서 청산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청산관재인을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청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청산관재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채권자는 청산의 신문공고 일로부터 2년 이내에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청산으로 인한 주주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전입금이 주주에게 배분이 되는 경우에는 주주는 채권자의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전입금을 청산관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용어해설

API	Angka Pengenal Impor /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API-P	Angka Pengenal Impor Produsen /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For Manufacturers
API-U	Angka Pengenal Impor Umum / General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BI	Bank Indonesia / Central Bank of Indonesia
BKPM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BPHTB	Bea Perolehan Hak atas Tanah dan Bangunan / Land and Building Rights Duty
CIF	Cost, Insurance, Freight
CIT	Corporate Income Tax
DGCE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DNI	Daftar Negatif Investasi / Negative List of Investment
EIT	Employee Income Tax
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KITE	Kemudahan Impor Tujuan Ekspor / Import Facilities For Export Purposes
LGST	Luxury Goods Sales Tax
NIK	Nomor Identitas Kepabeanan / Customs Identification Number
NIPER	Nomor Induk Perusahaan / Company Registration Number
NJOP	Nilai Jual Objek Pajak / The Sale Value of the Tax Object
PBB	Pajak Bumi dan Bangunan / Land and Building Tax
PDRP	Pajak Daerah Dan Restribusi Daerah / Regional Tax and Retribution
PE	Permanent Establishment
PERDA	Peraturan Pemerintah Daerah / Regional Government Regulation
PMA	Perusahaan Penanaman Modal Asing / Foreign Investment Company
PPh	Pajak Penghasilan / Income Tax
PT	Perseroan Terbatas / Limited Liability Company
RO	Representative Office
VAT	Value Added Tax
WHT	Withholding Tax

How we can help you set up business in Indonesia

Indonesia is considered to be a country with a complex regulatory environment. It does not matter what business you are in, what phase you are in or whether you will enter the Indonesian market through a new establishment, merger or acquisition; with our extensive knowledge, expertise and experience, we can assist you to always comply with regulatory and compliance requirements.

Once you enter the market, we can also help you manage your non-core functions including bookkeeping, payroll and corporate secretarial so that you can always focus on your core business: an important factor to your success.

Pre-Establishment Phase

We can help you to plan your investment and advise you on various tax and regulatory considerations before you decide to establish or acquire a business in Indonesia.

Establishment Phase

We can assist you to go through the required licensing process and liaise with various authorities in Indonesia. Our local expertise and experience will help ensure a smooth process for your new establishment, merger or acquisition.

Post-Establishment Phase

Once you set up your business in Indonesia, you can focus on your core business while we manage your important back-office functions. We will help you to manage your corporate secretarial, accounting and payroll functions and ensure that you always comply with compliance and governance requirements.



Our Services

We focus our services to meet the needs of businesses entering the Indonesian market. We recognise the need for intensive support in the critical period when you first enter Indonesia.

Our business services can be tailored to meet your specific needs, allowing you to select services appropriate to your situation and the current phase of your business. Our services are coordinated by a team that includes both Indonesian and international members.

Inward Investment Services

Inward Investment Advisory

We will provide you with advisory work which can include:

- Advice on the tax and regulatory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a business/entity in Indonesia, such as procedures and licensing requirements
- Advice on the tax and regulatory requirements for mergers, acquisitions and business expansions
- Advice on the various compliance/governance requirements for your entity in Indonesia
- Compliance reviews
- Advice on employment and compliance aspects such as employment terms and conditions and employment contracts
- Advice on the requirements for liquidating an entity in Indonesia.

Business Licensing and Immigration Services

We can assist you with various procedures and liaison with government authorities, which services can include:

- Assistance with various licenses/approvals/permits for company establishment, business expansion and amendments, mergers and acquisitions
- Liaison with government agencies/authorities such as the Investment Board, Ministry of Trade, Ministry of Industry, Ministry of Laws and Human Rights and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 Arrangements for proper permits and administration for the employment of an expatriate
- Assistance in the disposal of assets, settlement of liabilities and other required procedures to liquidate an entity in Indonesia.

Investment Facilities

We can assist you to plan, make and submit a complete application for obtaining investment facilities, which can include:

- Assistance in planning and applying for tax allowance and tax holiday facilities
- Assistance in planning and applying for import duty exemption for capital goods and raw materials

Corporate Services

Corporate Secretarial

Good corporate governance is a key aspect for foreign investment in Indonesia. We will assist you to manage governance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under the Indonesian Company Law.

- Maintenance of corporate secretarial matters for your company, such as the arrangement and administration of Shareholders' Meetings/Circulars/Resolutions
- Amendment of Articles of Association
- Liaison with Public Notaries and the 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

Accounting Services

Monthly Accounting

We will maintain your transactions and bookkeeping and produce financial statements in accordance to the Indonesian Accounting Standards as well as manage your non-tax compliance/reporting requirements. This will ensure you produce proper and timely records and reports:

- Provision of cash management services
- Maintenance of transaction records and bookkeeping;
- Production of financial stat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Indonesian Accounting Standard

Compliance Administration

We can advise and assist in various non-tax compliance requirements, which include:

-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Offshore Loan Reports and Prudential Principle Reports to the Indonesian Central Bank
-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Investment Activity Reports to the Investment Board
- Preparation of Import Realisation Reports for the Ministry of Trade

Payroll Services

Payroll Administration

Our payroll administration services will ensure that you can manage accuracy, security and confidentiality as key aspects of your payroll, as well as getting access to our technology and expertise in employment compliance matters:

- Calculation of monthly payroll including bonus, allowances, overtime, take-home pay, employee income tax and employee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 Payment of take-home pay to each employee's bank account, including the distribution of salary slips
- Administration of social security, insurance and pension contributions
- Calculation, payment and reporting of employee income tax

Payroll Related Advisory

We can advise on employment compliance-related aspects, which include:

- Advice on compliance with legislation such as employment contracts and social security and pension contributions;
- Guidance on employee stock option plans;
- Recommendations on payroll schemes such as the composition of salary and allowances, benefits in-kind, etc.

Employee Termination and Resignation

We can assist you with the employment termination/resignation process, which can include:

- Calculation and payment of severance packages including the related income tax
- Drafting of employment termination agreements
- Socialisation and communication of termination/resignation matters to employees

PwC Indonesia Services

Our broader PwC team can provide other services to support your business in Indonesia. Our highly qualified, experienced professionals provide industry focused services, including:

- **Assurance Services** provide assurance over any system, process or controls and over any set of information to the highest PwC quality.
 - Risk Assurance
 - Financial Audit
 - Capital Market Services
 - Accounting Advisory Services
- **Tax Services** optimise tax efficiency and contribute to overall corporate strategy through the formulation of effective tax strategies and innovative tax planning. Some of our value-driven tax services include:
 - Corporate tax
 - International tax
 - Transfer pricing (“TP”)
 - Mergers and acquisitions (“M&A”)
 - VAT
 - Tax disputes
 - International assignments
 - Customs
 - Investment and corporate services
- **Advisory services** implement an integrated suite of solutions covering deals and transaction support and performance improvement.
 - Business Recovery Services
 - Capital Projects & Infrastructure
 - Corporate Finance
 - Corporate Value Advisory
 - Deal Strategy
 - Delivering Deal Value
 - Transaction Services
- **Consulting services** help organisations to work smarter and grow faster. We consult with our clients to build effective organisations, innovate and grow, reduce costs, manage risk and regulations and leverage talent. Our aim is to support you in designing, managing and executing lasting beneficial change.
 - Management Consulting
 - Risk Consulting
 - Technology Consulting
 - Strategy Consulting

PwC Indonesia

Korean Business Desk Contacts



Lok Budianto

Partner

lok.budianto@id.pwc.com
+62 21 50992901 ext. 81610



Ali Widodo

Partner - Tax

ali.widodo@id.pwc.com
+62 21 50992901 ext. 81623



Taehun Jung

Advisor

taehun.jung@id.pwc.com
+62 21 50992901 ext. 81449
+62 8119891403 (mobile)



In-Hyuk Park

Advisor

inhyuk.park@id.pwc.com
+62 21 50992901 ext. 83600



Jay Park

Advisor

jay.y.park@id.pwc.com
+62 21 50992901 ext. 83776

Samil PwC Contact



Hong-hyeon Kim

Partner

Global Tax Services, KICPA, FRM

Seoul, Korea

hong-hyeon.kim@pwc.com
+82 2 7093320
+82 10 64169090 (mobile)

PwC Indonesia Investment Services Contacts



Adi Pratikto
Partner
adi.pratikto@id.pwc.com
+62 21 50992901 ext. 81605



Djumanto Manto
Senior Manager
djumanto.manto@id.pwc.com
+62 21 50992901 ext. 81703



Irene Kurniawan
Manager
irene.kurniawan@id.pwc.com
+62 21 50992901 ext. 81852



Narindra Krisnamurti
Manager
narinda.krisnamurti@id.pwc.com
+62 21 50992901 ext. 83277



Shanty Irawati
Manager
shanty.irawati@id.pwc.com
+62 21 50992901 ext. 83267

PwC Indonesia is comprised of KAP Tanudiredja, Wibisana, Rintis & Rekan, PT Prima Wahana Caraka, PT PricewaterhouseCoopers Indonesia Advisory, PT PricewaterhouseCoopers Consulting Indonesia and Melli Darsa & Co., Advocates & Legal Consultant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and all of which together constitute the Indonesian member firm of the PwC global network, which is collectively referred to as PwC Indonesia.

© 2019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